건축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	심의일자	2023. 9. 1. ~ 9. 8.	
건축종별 건축주 건축주	[]신축, []증축, []대수선, [○]기타 울산광역시 북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				
	지번 : 1082번지		관련지번 :		
	대지면적 : 5,129m²		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장애물제한표면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1,022.21 m²		건폐율	全: 19.93%	층수 지하 : 1층 / 지상 : 3층
	주용도 : 업무시설(보건소)		구조	: 철근콘크리트구조	세대수(호)/동수 : 세대 / 1동
	최고높이 : 14.95m		용적률	<u>ਵ</u> ੇ : 58.16%	연면적 : 5,395.96㎡
심의내용	구 분 주요 심의결과			의결과	
	종 합의견	지료 임리 등 기존 철거비에서 석면해체공사 해당 할 경우 특히 고형화 처리비의 비율 적용 등 특정폐기물 종별에 따른 처리비의 적용 등에서 적정하게 적용할 것 -3p- ○ 사업계획 중 공사기간 8개월 추정이나 민원인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이므로 적정한 계획으로 최대한 단축 할 것 -4p- ○ 전기 자동차 관련 시설은 반드시 지상 주차장에 배치할 것 ○ 설계공모지침서 중 문자의 크기는 프로그램 마다의 상이점이 있어 제출시 큰 문자의 경우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1포인트 크기 기준물(가로×세로 가 0.35×0.35mm) 명시해 줄 것 ○ 공공발주사업 중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법위와 대가기준」제11조제4항제1호에 의거 (리모델링, 인테리어)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항에 따라서 산정대가의 1.5배를 적용할 것. ○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므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함 ○ 철골 해체작업에 용접기 사용으로 화재,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철거 작업할 것 ○ 철거작업 중 먼지 비산,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<u>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u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